

의안번호	2210222
의 퇴 인	강경숙 의원
회 답 일	2025.07.31.
추계번호	25C265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100만원(연평균 2,03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안 제43조의2)	50.6	-	-	-	50.7	101	20.3

주: 1. 단수조정으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신규 선거권자가 모두 투표에 참여하며, 제보권선거가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의2(선거권)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3조의2(선거권)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선거공보물 제작, 투표소 설치 및 투·개표관리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 16~17세 세대주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대 단위로 제작·발송되는 선거공보물 관련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 개정안에 따른 선거권자 증가율은 약 2%이므로, 투표소 수나 투·개표 관리인력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선거권이 부여되는 16~17세 선거권자의 투표용지 인쇄비용으로 함
 - － 교육감의 임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자를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는 '26년, '30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총괄적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16~17세 선거권자의 투표용지 인쇄비용을 산출하며, 신규 선거권자의 투표용지 매수에 인쇄단가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투표용지 매수) 신규 선거권자의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의 중위수준 전망에 따른 연령별 인구를 준용하여 산출¹⁾
 - 통계청 전망에 따른 16세, 17세 인구를 신규 선거권자로 함
 - 신규 선거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 신규 선거권자의 수와 투표용지 매수가 동일하다고 가정

[표 2] 16~17세 인구 전망

(단위: 명)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 선거권자	886,643	915,481	942,569	925,056	888,423
16세 인구	439,377	475,057	466,483	457,516	429,847
17세 인구	447,266	440,424	476,086	467,540	458,576

자료: 통계청 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투표용지 인쇄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에 따라 투표용지 1장당 57.1원으로 함
 - 현행 투표용지 규격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 참고로,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용지의 규격은 후보자 수가 2~5명인 경우 모두 동일함
- (선거 주기)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26년과 '30년에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
 - 추계기간 동안 재보궐선거는 없다고 가정

□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1억 136만원(연평균 2,027만원)으로 추계

[표 3] 추계결과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신규 선거권자(A, 명)	886,643	-	-	-	888,423	-	-
투표용지 단가(B, 원)	57.1	-	-	-	57.1	-	-
추가재정소요(A×B, 천원)	50,627	-	-	-	50,729	101,356	20,271

자료: 통계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